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4 발의연월일: 2020. 10. 14.

발 의 자:김경만・오영환・이성만

신정훈 · 남인순 · 황 희

김수흥 · 김승원 · 김정호

어기구 · 황운하 · 이규민

송영길 · 김영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창업중소기업 투자 및 정착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등에 대한 지방 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감소 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이 특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8조의3, 제60조, 제101조의2 및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제2호·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0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75를"로, "2020년"을 "202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을 "2023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	특례) ①
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	
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	
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	
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	
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u>	<u>202</u>
<u>0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u> 3년</u>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	
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 산세를 추징한다.

② (생 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 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② (현행과 같음)
③
<u>2023년</u>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저 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 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 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 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 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 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
한 감면) ①
<u>.</u>
,
1. <u>2023년</u>

- 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 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 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 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 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 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

 2. <u>2023년</u>
② <u>2023년</u>

세액을 경감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 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법인설립 등기

④ ~ ⑨ (생 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저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 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

3	
1. <u>2023년</u>	
 2. 2023년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u>100분</u>

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④ (생 략)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기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

<u>의 75를2023년</u>	-
<u><단서 삭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u>2023년</u>

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 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 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한다.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
<u> 3년</u>